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3. 15.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2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1년 2월 28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8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1년 3월 9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홍성배)

### 가. 제정이유

영등포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전문과 부칙을 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제정(변경)

-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안 제5조)
  - ※ 현행 : 사회교육시설용
  - ※ 제정 : 평생교육시설용(사회교육법 → 평생교육법으로 개정 '99. 8. 31)
- 임대주택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9조)
  - ※ 현행 : 전용면적 85㎡ 이하
  - ※ 제정 : 전용면적 60㎡ 이하(서민주택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
- 사권제한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안 제11조)
  - ※ 현행 : 도로, 공원용지만 감면(안 제11조제1항)
  - ※ 제정 :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건설교통부 요구사항 반영)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각각 5년간 면제함 (안 제12조)
  - ※ 현행 : 도시계획법 제7조 규정적용
  - ※ 제정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0. 1. 28 신설) 제3조로 적용법령 변경
-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다만, 안 제22조(옥외광고물정비사업)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부칙)

#### 2) 현행조례와 동일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안 제6조)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10조)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안 제13조)
  -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안 제14조)
  -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5조)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안 제16조)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안 제17조)
  - 영등포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18조)
  -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19조)
  - 전생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안 제20조)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21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22조)
  -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23조)
- 3) 현행조례에서 배제되는 감면규정
-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 국가유공자 자동차 면허세 감면규정 삭제(현행조례 제2조제2항·제3항)
    - 장애인자동차 면허세 감면규정 삭제(현행조례 제5조의2)
    - 매매용 중고자동차 면허세 감면규정 삭제(현행조례 제11조)
    - 경형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 삭제(현행조례 제11조의2)
    - ※ 지방세법 개정(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
  -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규정 삭제(현행조례 제3조)
    - ※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감면사항 규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등 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하여 지난 1월 31일 입법예고를 마친 사안으로서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5조의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9조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의 재산세 경감대상 면적을 전용면적 85㎡ 이하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고, 제11조의 사원제한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을 도로, 공원용지에만 한정하던 것을 지형도면 고시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추가하고, 제12조의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근거법령이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고, 부칙 제1조의 본 조례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부칙 제2조의 본 조례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며, 현행조례에서 배제되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매매용 중고자동차, 경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 면허세를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세법에 반영하였고, 이외의 조항은 변동이 없는 감면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9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전용면적 40㎡ 이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 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고, (안)제10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부과시 제일 낮은 1,000분의 3을 적용하며, (안)제14조의 아파트형 공장은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하고, (안)제23조의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도 제일 적은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사항은 우리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로 만료되어 우리구 여건을

반영한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감면규모를 보면 2000년도에 1,210건 3억 6,748만원이며, 내역으로는 (안)제3조 종교단체의 병원 32건 1,370만원, (안)제9조 임대용 공동주택 1,044건 2,141만원, (안)제10조 미분양주택 11건 3,810만원, (안)제11조 사권제한토지 71건 2억 9,018만원, (안)제14조 아파트형공장 82건 409만원인 바, 이는 우리구의 2000년도 구세입 585억 6,000만원의 0.6% 수준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시달한 조례준 (안)에 준하여 제정한 (안)이므로 상위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으나 감면대상이 우리구의 여건과 구민의 정서,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의안 번호	163
----------	-----

제출일자 : 2001. 2. 23.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영등포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안)에 의거 현행 조례와 비교 검토 조례전문 및 부칙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변경)

-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안 제5조)
  - ※ 현행 : 사회교육시설용
  - ※ 제정 : 평생교육시설용(사회교육법 → 평생교육법으로 개정 '99. 8. 31)
- 임대주택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9조)
  - ※ 현행 : 전용면적 85㎡ 이하
  - ※ 제정 : 전용면적 60㎡ 이하(서민주택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
- 사권제한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안 제11조)
  - ※ 현행 : 도로, 공원용지만 감면(안 11조제1항)
  - ※ 제정 : 지형도면 고시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건설교통부 요구사항 반영)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각각 5년간 면제함 (안 제12조)
  - ※ 현행 : 도시계획법 제7조 규정 적용
  - ※ 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0. 1. 28 신설) 제3조로 적용법령 변경

-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다만, 안 제22조(옥외광고물정비사업)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부칙)
- ※ 현행 :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 제정 :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나. 현행조례와 동일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안 제6조)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10조)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안 제13조)
-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안 제14조)
-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5조)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안 제16조)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안 제17조)
- 영등포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18조)
-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19조)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안 제20조)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21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22조)
-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23조)

다. 현행조례에서 배제되는 감면규정

-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 국가유공자 자동차 면허세 감면규정 삭제(현행조례 제2조제2항·제3항)
  - 장애인자동차 면허세 감면규정 삭제(현행조례 제5조의2)
  - 매매용 중고자동차 면허세 감면규정 삭제(현행조례 제11조)
  -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 삭제(현행조례 제11조의2)
  - ※ 지방세법 개정(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
-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규정 삭제(현행조례 제3조)
- ※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으로 감면규정 이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및 구세감면조례 개정 준칙안

-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 구세감면조례 개정 준칙안
  - 세정 13400 - 1301 (2000. 11. 23)
  - 세정 13400 - 1372 (2000. 12. 7)

- 세정 13415 - 242 (2001. 2. 7)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의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 제4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 1.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2.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3.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영등포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영등포구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 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 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완료·통보대상 건축물은 옥외광고물 정비 완료수와 비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 제6장 보 칙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2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별지제1호서식)

서울시 영등포 구 세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 조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〇〇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p> <p>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서명)</p> <p>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